제5회 규제합리화위원회
성장분과위 회의록

2026. 6. 5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 : ‘26. 6. 5. (금)

○ 출석위원(12명)

- **남궁범 분과위원장** (주재)

- 민간위원 : 강영철, 김춘순, 류정모, 박민수, 박익수, 이세영, 이종원, 전창대, 최원석 위원

- 정부위원 : 국조실, 과기부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분
①	2026-158	과기부	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정비계획	보고
②	2026-159	개보위	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 정비계획	보고
③	2026-160	국조실	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및 위원회 역할	보고

Ⅲ. 회의 결과

1. (보고)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정비계획(과기부, 2026-158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2026년 기존규제 정비 추진방향**

- (**혁신 친화적 R&D 환경 조성**) **도전적 연구 활성화·연구 몰입 환경 조성**을 위한 **성과평가 체계 개선** 및 **행정절차 정비**

- (**신산업 성장 촉진**) AI, 디지털, 방산 등 **미래 성장산업**의 신속한 **시장 진입**과 **투자 확대**를 위한 **규제특례 확대**

○ **2026년 핵심 정비과제 이행상황**

- (**국가 R&D 행정서식 재정비**) 행정 서식 **통합·표준화** 및 **불필요한 서식을 정비**하고 행정 시스템 연계로 **서식 자동 제출 확대** 추진

- (**연구비 규정 네거티브 규제 전환**) 연구기관 간접비 사용 기준을 기존 **특정 항목 허용 방식**에서 **원칙 허용·예외적 제한 방식**으로 **전환**

- (**평가체계 개편**)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해 **결과물 중심**의 **평가 등급제를 폐지**하고 연구의 충실성 등 **과정 중심 평가 추진**

- (**AI 데이터센터 활성화**) 「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을 통해 **인허가 간소화** 및 **규제 특례 부여**

- (**新실증특례 패스트트랙 도입**)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**신기술 실증**에 대한 **특례 지정 절차**의 **신속 처리 체계 도입**

□ **논의내용**

○ **연구자 행정부담 완화**를 위한 **지속적인 제도 개선 필요**

○ 신기술 산업의 **다양한 변화 가능성**을 고려한 **대응 전략 마련 필요**

□ **보고결과 : 원안대로 접수**

2. (보고) 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 정비계획(개보위, 2026-159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2026년 기존규제 정비 추진방향**

- (**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**) AI 기술 개발 목적 **개인정보 활용 특례 도입** 및 **가명 정보 활용의 간소화 방안 마련** 등 **제도 정비 추진**

- (**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**) **개인정보 유출**에 **대비**한 **예방적 투자 기업**에 **인센티브 제공**과 **영세·중소기업 기술지원** 등을 통해 **사후제재 위주**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선

○ **2026년 핵심 정비과제 이행상황**

- (**AI 개인정보 포함 학습 데이터 활용 허용**) 공익 목적으로 **고품질 데이터를 활용**할 수 있도록 **개인정보보호법**에 **AI 특례 신설**

- (**가명정보 처리절차 간소화**) **데이터 특성**에 따라 가명처리 **절차를 차등적용**하고 **저위험 데이터**의 경우 **절차 간소화**

- (**비조치의견서**)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**법 적용이 불명확한** 상황 발생 시 **신청인이 검토를 요청**하고 기관이 **사안을 검토 및 안내**

- (**예방투자 인센티브 도입**) 법정 기준을 **상회하는 안전조치** 및 **보호 책임경영** 등 **자발적 예방 활동**을 촉진하는 **인센티브 체계*** 마련

  *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정도,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 과징금 감경

- (**영세기업 지원강화 및 처분부담 경감**) 중소·영세기업의 **경미한 법 위반**은 **기술지원 등을 통한 위반행위 시정**으로 **처분 경감**

□ **논의내용**

○ AI 등 **신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**를 위해 **개인정보보호 규제**에 대한 **선제적 대응** 필요

○ **개인정보보호 대응 역량이 부족**한 중소·영세기업에 대한 **교육** 및 **기술지원 확대** 필요

□ **보고결과 : 원안대로 접수**

3. (보고)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및 위원회 역할(국조실, 2026-160호)

□ **보고내용** (요약)

○ **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**

- (**개요**) 현행 **규제에도 불구**, 신기술 기반 제품·서비스를 **일정 조건 하**에 출시한 뒤 **안전성이 확보**되면 규제를 **합리적으로 개선**하는 제도*

  *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, 신속확인을 연계하여 운영

- (**운영체계**) **국무조정실**이 **제도운영**을 총괄하며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* **규제샌드박스 운영 → 2,657건 승인·1,260건 규제개선**('19년~)

  * ICT융합(과기부), 산업융합(산업부), 규제자유특구(중기부), 혁신금융(금융위), 스마트도시(국토부), 연구개발특구(과기부), 모빌리티(국토부), 순환경제(기후부)

○ **규제샌드박스 관련 위원회의 역할**

- (**주요성과**) **표준운영지침 마련**을 통해 **제도의 실효성을 제고**하고 법령 정비 필요 과제를 **선제적으로 관리**하여 **체계적인 후속 조치 추진**

  · 다만, 쟁점 조정에 대한 **법적 근거**가 충분치 않아 **이견조정 기능에 제약**이 있고 부처의 **법령 정비 지연** 시 실효적인 **이행관리에 한계**

○ **향후 추진 계획**

- (**조정기능 강화**) '**샌드박스 통합관리법**' **제정**을 통해 위원회의 샌드박스 관련 **심의·조정 근거**를 명확히 하고 **쟁점 과제에 대한 조정**과 **위원회 조정 결과**에 대한 **주관기관의 처분의무**를 명시

- (**법령정비 이행관리 강화**) '**샌드박스 통합관리법**'을 통해 **특례 부여 단계**부터 부처의 **법령정비 검토를 의무화**하고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른 **법령정비** 및 **진행상황 보고 의무 명시**

□ **논의내용**

○ 규제샌드박스 **운영 내실화**를 위한 위원회 **조정기능 강화** 등 **개선안**의 **차질 없는 추진** 필요

□ **보고결과 : 원안대로 접수**